

2020년 하반기 2차 연구윤리분야 관련업무 및 연구경력 3년 인정범위

□ 연구윤리 지원분야 자격요건 인정범위

○ '연구윤리, 저작권 등 관련업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'는 아래의 요건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.

① 연구윤리, 저작권 등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

- 관련업무 3년 이상의 경력사항을 충족하는 기관(4대보험 가입기준)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해당 경력증명서에 관련업무 사항이 명시된 경우
- ※ 지원서 작성시,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활동기간 및 내용,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고 최종 면접전형 이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. 증빙서류 미제출시 차기전형의 기회 없음.

② 연구윤리, 저작권 등 관련 연구경력 3년 이상 경력자

- 학술연구(저술)의 시작시점의 증빙은 공식적인 학술연구 및 저술출판 계획서(협약서 등 포함)를 기본으로 하며 계획서가 없을 시 본인의 서명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여 자유양식으로 제출
- 학술연구(저술)의 종료시점의 증빙은 논문(등재후보지 이상 / 공저자 이상) 및 저서(공저자 이상)가 있는 경우 출판된 시점으로 하며, 논문 및 저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상에 명시된 연구기간만 연구경력으로 인정
- ※ 연구실적의 연구기간이 겹치는 경우 중복된 기간은 추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학술연구 및 저술출판 계획으로 복수의 연구결과물 출판시 최종 출판된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연구경력을 산정
- ※ 단순 연구윤리 관련 석박사 과정의 연구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석박사 과정 및 학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(등재후보지 이상 / 공저자 이상) 및 저서(공저자 이상)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경력으로 인정
- ※ 지원서 작성시,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활동기간 및 내용,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고 최종 면접전형 이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. 증빙서류 미제출시 차기전형의 기회 없음.

③ 연구윤리, 저작권 등 관련업무와 연구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경력자

- 관련업무와 연구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의 경력사항이 될 경우